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기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5

발의년월일 : 2015년 6월 15일

발 의 자 : 박기열, 박중화, 우형찬, 서영진, 강감창, 박운기, 김상훈, 김태수, 박진형, 신언근, 이창섭, 최판술, 성중기 의원(13명)

1. 제안 이유

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발생 여부 및 적정 운송원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장의 책무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운송원가를 공개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인상 요인이 되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도모코자 함

2. 주요 골자

가.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근거 마련(안 제3조제1항제6호)

나.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 공청회,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(안 제10조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『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, 제3조 제1항제6호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
2.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·장비의 확충
3.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
4. 대중교통체계 구축·운영·관리에 대한 지원
5.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6.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

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)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 1. ~ 5. (생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**6.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**
②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 ~ 제9조 (생략)	제4조 ~ 제9조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**제10조(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)**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.
제10조 ~ 제17조 (생 략)	제11조 ~ 제18조 (현행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)